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1816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3. 27.

판 결 선 고 2015. 4. 10.

주 문

1.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954,780원, 등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960,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7

가. 원고는 [redacted]탈 주식회사(이하 '[redacted]탈'이라 한다)로부터 B 마이바흐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금융리스한 C, 주식회사 [redacted]프에 이어 2010. 8. 27. 위 자동차를 승계리스함으로써 2010. 8. 31. 위 자동차를 취득하였고, 2010. 9. 1. [redacted]탈 법인장부가액인 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600,000원 및 등록세 4,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4. [redacted]탈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가 금융리스 차량임을 통지받았는데, 리스이용자가 차량 취득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할부리스료를 매월 지급함으로써 금융리스 계약기간 종료시 위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이상 리스제공자인 현대캐피탈의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249,363,000원과 원고의 당초 신고가액 80,000,000원의 차액 169,36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342,04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13,428,7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취득세·등록세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한하여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5. 22. 기각되었고, 2014.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거래관행에 따라 차량판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7

업자에게 취득세·등록세 신고를 비롯한 자동차 등록업무를 일임하였으므로 취득세·등록세의 과소신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도 담당직원의 과오로 위 차량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나서야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원고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므로 위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존재에 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201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7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되는 것인 이상 원고가 관련 법령에 무지하여 취득세·등록세 신고 업무를 제3자에게 일임하였다거나 피고가 뒤늦게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의 명시를 요구한 국세징수법 제9조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의 첨부를 명한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59조의5,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등의 규정이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에 규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7

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바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고(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참조), 납세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 하자의 보정도 서면으로 하여야지 구두로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65 판결 참조), 이는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의 명시를 요구한 구 지방세법(2010. 12. 9.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3. 10.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납세고지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는 것이고,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받고 피고 측 직원을 찾아가 산출근거 등에 대해 문의하자 그제야 위 직원이 원고에게 가산세의 종류, 세액, 그 산출근거 등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위 납세고지서에 직접 적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7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남성우

판사 김재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7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2. 9.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7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끝.